

科學的 搜查=

合理的裁判=

人權擁護

大韓法醫學會 篇

大韓法醫學會는 1976년 12월에 창립됐고, 기구는 임기 2년의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의 임원과 심사 및 재무 각 1명, 상임위원 및 평의원 약간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회원은 약 81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1981년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에 신규로 가입한 학회이다.



◇ 李濟九會長

◇ 창립취지 ◇

法醫學이란 立法·行政·司法의 분야에 걸쳐 法律上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醫學的인 사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써 裁判醫學 또는 鑑定醫學이라 할 수 있으며, 犯罪搜查나 裁判上에 필요한 각종 증거에 대하여 醫學的 鑑定을 시행함으로써 확실한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

흔히 상식적으로는 法醫學을 刑法上의 문제에 응용되는 것으로만 인식되고 있으나 사실은 民法上의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응용되는 것.

刑法上에 있어서는 生體檢査·屍體檢査·物體檢査·精神檢査·現場檢査 등을 통해 搜查上 및 裁判上의 자료를 제공하며, 民法上에 있어서는

親生子鑑定 등으로 法律上 분쟁의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 이처럼 法律上의 문제 해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裁判의 科學化를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나아가 法秩序維持와 人權擁護에 막대한 공헌을 하게 된다는 것.

미국·영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法醫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檢屍官·鑑察官·法醫學教室 등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 법의학 교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國立科學搜查研究所와 治安本部 鑑識課에서 증거물

의 감정을 받고 있는 정도이며, 대학에 法醫學科나 법의학교실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겨우 고려대학교에서만 法醫學教室이 설치되어 있는 정도라는 것.

오늘날 法醫學이 더욱 중요시 되는 것은, 특히 문화인에 있어서는 生命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人權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人權이 보호되고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法醫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法醫學의 역할이 중요시 될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 절실하게 法醫學의 역할이 필연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에 이를 더욱 연구발전시킴으로써 社會秩序維持와 人權擁護는 물론 裁判의 科學化와 搜查의 科學化에 기여하고자 뜻을 같이 하는 관련분야의 인사들이 모여 회원 상호간의 지식교환은 물론 법의학의 연구와 보급을 촉진시키며 이 분야를 전공하는 이들의 학문적발전과 사회적품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1976년 12월 法醫學會를 창립하게 됐다.

◇ 研究活動 ◇

法醫學會 役割의 중요성으로 보아 할일이 너무 많다. 그러나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學會의 기초를 다져가면서 점차적으로 연구발전시켜 나갈 계획아래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

학회창립이래 지금까지는 주로 세미나와 학술대회, 집담회 및 학회지발간등의 사업을 해왔는데,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다지고, 연구결과의 교환과 보급을 통하여 문제의식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매년 「전국법의학세미나」를 개최하여 왔는데 금년에 10회가 되며, 「법의학학술대회」는 5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매월 「월례 집담회」를 가져왔는데, 금년도 월례회집담회 계획으로는 ▲ 3월 15일 「생명윤리와 임상시험」 ▲ 4월 12일 「장기이식과 이에 대한 법의학

적고찰」 ▲ 5월 10일 「인공수정 및 불임에 대한 법의학적고찰」 ▲ 6월 14일 「안락사에 대한 법의학적고찰」 ▲ 9월 13일 「응급치료에 대한 법의학적고찰」 ▲ 11월 15일 「의료후의 급사에 관한 법의학적고찰」을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다.

◇ 發展方向 ◇

우리나라의 民主化는 더욱 人權保護가 科學的 및 制度的인 보장이 요청되고 있으며, 福祉社會의 구현과 經濟社會의 발전에 따른 법률적문제들이 다양화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法醫學의 역할도 광범위하게 고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法醫學의 발전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각 大學에 法醫學教室을 설치하여 專門人力을 양성하도록 하는 한편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며, 다음으로 모든 과학자 및 법조계 인사들은 물론 법률과 인권에 관계되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망라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실공히 법의학분야의 대표적기관으로서 발전시킬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국한된 법의학회가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의 法醫學關係機關과 교류하여 國際的인 法醫學會가 되도록 발전시킨다는 데 궁극적 목표가 설정되고 있다는 것.

◇ 歷代任員 ◇

韓國法醫學會 歷代任員은 初代부터 지금까지 現任員이 맡아 왔는데, 監事에 정병구씨가 1980년에 故人이 되었기 때문에 1명이 교체됐을 뿐이다. 現在의 任員名單은 다음과 같다.

▲會長=李濟九 ▲副會長=金東植(경희대의 대병리학교실) · 金萬遠(연대의대병리학교실) ▲監事=서진건(부산연산의원) · 李旼圭(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總務=文國鎮(고려대의대법의학교실) ▲財務=禹相惠(국립과학수사연구소) ▲學術=최진(카톨릭의대병리학과) ▲審査=하재구(하정형외과)